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0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5.

발 의 자: 한준호·박상혁·김병주

김문수 • 민형배 • 박용갑

이용우 • 정준호 • 김민석

정을호 · 김영환 · 김용민

이건태 · 이소영 · 김성회

김동아 • 조승래 • 박균택

전현희 · 남인순 의원

(20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.

그런데 범죄경력 자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상 민감정보로서 보다 엄격히 보호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해당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을 통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직접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

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주규정을 삭제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과 같이 암호화 및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·도경찰청장 등은 해당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,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 간주규정을 삭제하며, 경찰청이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 1항 단서 삭제,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한다"를 "하고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때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절차·범위"를 "절차·범위, 제3항에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"으로 한다.

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,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의3(종사제한 확인을 위한	제19조의3(종사제한 확인을 위한
범죄경력조회) ① 소화물배송	범죄경력조회) ①
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	
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	
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	
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	
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	
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	
하는 시・도경찰청장 또는 경	
찰서장에게 「형의 실효 등에	
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범	
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	
다만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	<u><단서 삭제></u>
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	
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	
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	
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	
한 것으로 본다.	
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	2
를 요청받은 시·도경찰청장	
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	
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<u>한다</u> .	하고, 소화
	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의 <u>절차·범위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또는 영업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 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한다.

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,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시스템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u>4</u>							
			절차	• 범·	위,	제3	항-
에	따른	정보	니시스	템의	구	<u>축</u>	